

의안번호	2211897
의 퇴 인	추경호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5.
추계번호	25F406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,
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, 법인세 및 소득세는 2027년 323억 원, 2029년 326억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974억원(연평균 324억 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및 소득세,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7조의4)	-34	-35	-37	-106	-35
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8조의3)	-289	-289	-289	-868	-289
계	-323	-324	-326	-974	-324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의4 (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)	○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3년 연장 - (적용기한) 2025.12.31. → 2028.12.31.	
2	안 제8조의3 (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)	○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 3년 연장 - (적용기한) 2025.12.31. → 2028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7조의4 (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)	○	
2	안 제8조의3 (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이 부칙에 따라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,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7년부터 발생
 - 2026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는 2027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
-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계
 - 향후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3년(2022~2024년)간 공제대상인 상생결제 지급금액의 증가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
 - 동 조항에 따른 지급기한 60일 이내에 상생결제 지급금액은 2022~2024년간 연평균 3.4% 증가
 - 단, 2025년 공제실적의 경우 2024년 상생결제 지급금액의 증가율(2.7%)과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
-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계
 - 향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

- 동 세액공제의 최근 5년간 공제실적은 2020년 202억원에서 2023년 408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4년(잠정) 295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음

3. 상세 추계내역

가.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7조의4)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□ (제도개요) 동 제도는 기업간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상생결제 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구매대금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공제하는 제도

- 동 제도의 공제대상, 공제율 및 적용기한은 다음과 같음
 - 공제대상: 상생결제 제도를 통하여 다른 중소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기업
 - ※ 단,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의 비중이 전년대비 증가하지 않아야 함
 - 공제율: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에 따라 0.15~0.5%
 - ※ 지급기한 15일 이내 0.5%, 16~30일 0.3%, 31~60일 0.15%
 - 공제한도: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의 10%
 - 적용기한: 2025.12.31.
- 동 제도는 2016년 도입된 이래 세법개정을 통해 공제율 및 공제대상이 확대

[표 2]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(안 제7조의4)의 주요 연혁

시행연도	주요 개정내용
2016년	· 제도 도입 - 공제대상: 상생결제 제도를 통하여 다른 중소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기업 - 공제율: 지급기한 15일 이내 0.2%, 15~60일: 0.1%
2018년	· 공제대상 확대: 중소기업 → 중소기업
2022년	· 공제율 세분화 및 인상: - (기존) 지급기한 15일 이내 0.2%, 15~60일: 0.1% → (개정) 지급기한 15일 이내 0.5%, 15~30일 0.3%, 31~60일: 0.15% · 공제요건 완화 - 구매대금 중 현금성 결제 비중 관련 요건 삭제

- (감면실적)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최근 실적은 다음과 같음
 -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은 2020년 8억원에서 2024년 40억원으로 증가한 후, 2025년(잠정) 32억원으로 감소
 - 실적의 대부분은 법인세 공제실적이며, 소득세 공제실적은 연평균 1억원 수준

[표 3]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	2025(잠정)
공제실적	8	12	21	39	40	32
- 소득세	1	1	1	1	1	1
- 법인세	7	11	20	38	39	31

자료: 대한민국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

(2) 추계방법

- 향후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5년 잠정실적에서 최근 3년(2022~2024년)간 상생결제 지급금액의 연평균 증가 수준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지급기한 60일 이내 상생결제 지급금액은 2022년 17.8조원에서 2024년 18.4조원으로 연평균 3.4% 수준으로 증가

[표 4] 상생결제 지급금액 실적: 지급기한 60일 이내, 2022~2024년

(단위: 조원, %)

지급금액 구분	2022	2023	2024
지급기한 60일 이내	17.8 (7.3)	17.9 (0.4)	18.4 (2.7)
- 15일 이내	6.5	7.0	7.0
- 16~30일	2.0	2.0	2.0
- 31~60일	9.2	8.8	9.3

주: ()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

자료: 대·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향후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최근 3년간 상생결제 지급금액 실적의 연평균 증가율(3.4%)과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정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추정치: 2027~2029년
(단위: 조원, %)

구분	2027	2028	2029
공제액 추정치	34	35	37

(3) 추계결과

-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, 법인세 및 소득세는 2027년 34억 원, 2029년 37억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106억원 (연평균 3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및 소득세, 2027~2029년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7조의4)	-34	-35	-37	-106	-35

나.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8조의3)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- (제도개요) 동 제도는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, 해당 출연금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
 - 동 제도의 공제대상, 공제율 및 적용기한은 다음과 같음
 - 공제대상: 1.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등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,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
 - 2.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내국법인
 - 3. 상생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하는 내국법인
 - 4.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
 - 공제율: 10%
 - 적용기한: 2025.12.31.

- 동 제도는 2010년 도입된 이래 세법개정을 통해 공제율 및 공제대상이 확대되는 추세

[표 7]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(안 제8조의3제1항)의 주요 연혁

시행연도	주요 개정내용
2011년	· 제도 도입 - 공제대상: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등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,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거나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내국법인 - 공제율: 7%
2017년	· 공제율 확대: 7% → 10%
2020년	· 공제대상 확대: 상생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하는 내국법인 포함
2022년	· 공제대상 확대: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 포함

□ (감면실적)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의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실적은 다음과 같음

-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실적은 2020년 202억원에서 2023년 408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, 2024년 294억원으로 감소

[표 8]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실적: 2020~2024년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 (‘20~’24년)
공제실적	202	212	329	408	294	289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.

(2) 추계방법

□ 향후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(2020~2024년) 공제실적의 연평균 수준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추계

- 향후 법인세 공제액은 최근 5년(2020~2024년)의 연평균 감면액인 289억원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정

[표 9] 개정안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효과 추정치: 2027~2029년
(단위: 억원)

구분	2027	2028	2029
세수 감소효과	289	289	289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경우, 법인세 및 소득세수는 2027년 289억 원, 2029년 289억 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868억 원(연평균 289억 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0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및 소득세, 2027~2029년

(단위: 억 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8조의3)	-289	-289	-289	-868	-289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